

의안번호	제 8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##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2월 1일

## 제6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의안 번호	8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도의 지역보건 현황과 지역주민의 보건요구를 바탕으로 지역내·외 보건자료 자원 활용하여
  -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
  -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
- 충청북도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시행기간 : 2015년 ~ 2018년 (4개년)
- 주요내용
  - 가. 지역현황 분석 : 지역개황도, 인구, 사망원인, 질병 유병률, 건강행태 등
  - 나. 비전 및 5대 추진과제
    - 비전 :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건강 증진 실현
    - 5대 추진과제
      - ①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②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요인의 관리
      - ③ 지역간 보건의료의 불균등성 관리 ④ 감염성 질환의 관리
      - ⑤ 보건사업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강화

#### 다. 세부추진계획

- 중풍 예방관리,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, 금연환경 조성, 신체활동, 구강보건, 치매관리사업 등 사업관리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
- 충청북도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, 경동맥 초음파 검사,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
-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건강한 정신건강 확립
- 암 관리사업을 통한 암발생 감소 및 적절한 치료지원
- 건강 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조기 발견
- 병상의 과잉공급, 지역적 불균등성 등 시정으로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
- 취약계층 및 진료분야 등 공공의료사업으로 지역간 보건의료의 불균등 관리
- 지역사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
- 감염병예방관리 및 결핵관리 사업 추진을 통한 예방시스템 구축

#### 라.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

- 지역 보건의료 자원 운영 및 중장기 관리계획 구축
- 민간분야 협력자원 및 협력체계 구축

#### 마. 보건기관 자원 재정립

-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·증축, 의료장비 보강
- 보건인력 확충 및 질적강화
- 보건기관 예산 확충 및 보강

3. 의안전문 : 붙임 책자

4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역보건법

#### 제3조 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 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군·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·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(이하 "지역보건의료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·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□ 지역보건법 시행령

#### 제5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)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